

닭고기 먹어도 안전한가요?

지난 12월 동물병원을 거쳐 방역 당국에 신고된 충북 음성군 한 농장의 닭 집단 폐사 원인 이 정밀검사 결과 조류독감과 같은 유형의 고병원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명 '조류독감과동' 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그 여파로 양계농가뿐 아니라 닭고기 생산회사, 치킨전문점, 육류 유통회사 등 닭고기 관련업체에서는 닭고기 사태가 빚어지고 자살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됨은 물론이다.

조류독감에 대한 바른 지식을 쌓고 그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을 기르도록 노력하자.

1. 조류 인플루엔자의 정의

조류 인플루엔자는 닭, 칠면조, 오리,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에서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는 다르다.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약병원성, 비병원성으로 구분하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국내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고병원성 A/H5N1형으로 확인되었다.

2. 감염된 조류의 증상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며, 닭, 칠면조, 야생조류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며 주로 닭과 칠면조에 피해를 주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오리는 감염되더라도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닭의 경우 병원성에 따라 경미한 증상에서부터 갑작스럽게 폐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은 일반적으로 사료섭취가 감소되고, 육수나 비슬에서 청색증이 나타나고, 머리와 안면의 부종, 80%이상의 급격한 폐사 등을 나타낸다. 그러나 오리의 경우, 알을 생산하는 종오리는

급격한 신란을 저하나 경미한 폐사를 나타내지만, 육용 오리는 앞서 언급한대로 거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3. 감염 경로

농장간 전파는 주로 오염된 먼지, 물, 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 차량, 기구 및 장비, 달걀 등에 묻어 일어날 수 있으며, 달걀 속에 감염되어 난계대 전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가 닭이나 사육 오리와 접촉하거나 분변을 배설하여 전파하는 경우도 많아 이를 차단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내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의 혈청형은 미국 CDC 예비검사 결과, 인체감염을 일으킨 베트남 바이러스의 유전형과 그 기원이 다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7년 홍콩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H5N1)가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있으나 감염자는 주로 감염된 종사자나 감염된 생닭, 오리에 폭로된 사람이며, 닭고기 및 오리고기 섭취로 인하여 감염된 사례 보고는 없다.

4. 예방 및 조치사항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 및 3km 이내의 주변 지역의 닭, 오리농장 종사자, 살처분자는 작업시에는 개인보호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후 샤워,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자는 보건 당국의 지시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 제제를 복용하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인플루엔자 증상이 발생하는지 모니터해야 한다.

< 호흡기 질환 감염예방수칙 >

- 손을 자주, 깨끗이 씻는다.
- 환기를 자주 시킨다.
- 환풍기, 계상기, 배수관 등에는 반드시 물을 공급하고 개체기를 환기할 때에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린다.
- 출입문을 자주 닫고 계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등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은 피한다.

발생지역의 3km내에 있는 위험지역 소재 양계농가에서는 1일 2회이상, 3-10km사이의 경계지역 소재 양계농가에서는 1일 1회이상, 비발생지역에서도 계사 내·외부에 대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축주 및 관리인 등 종사자는 반드시 외출 후 귀가시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소독을 실시한 다음 계사에 출입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닭이나 오리의 도축장 영업자는 운반차량에 대한 철저한 세척과 소독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고기를 섭취할 때에는 75℃에서 5분간 열처리하면 바이러스가 모두 죽으므로 충분히 익혀서 먹도록 한


다.

5. 닭이나 오리고기의 식용여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3km이내의 닭이나 오리 · 달걀은 전부 폐기 조치되고, 3-10km사이의 조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도 이동통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오염원과 접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닭이나 오리 도축장에서는 도축검사를 실시하여 강한 개체만 도축되어 유통되고, 우리나라 식생활 습관상 날로 먹지 않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먹기 때문에 감염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정부의 대응

세계보건기구는 1월 29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동남아 국가와 다르게 방역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며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모범사례로 선정하였다. 현재까지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농림부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방역조치로 감염기회를 제거함으로써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 대외적으로 타국에 모범이 될 수준임을 인정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www.nih.go.kr>